Ⅶ. 결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성과를 보면 그다지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록 지금은 퇴직금제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록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속도와 노후보장 체제의 선진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제도는 선진국과 달리 비교적 빨리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위적으로도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근로자 노후보장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확정기여형제도와는 달리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설치 및 운영 상 엄격한 요건과 감독체제를 마련하여도 연금기금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 이를 위해 기업 파산 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대신 지급해주는 지급보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맥락에서 근퇴법은 제21조3항 규정을 통해 정부의 최후 보장 역할을 선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이 조항은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나,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확정급여형 제도와 관련된 사후적 지급보증체제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지며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미국 PBGC와 영국의 PPF를 요율 산출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유념할 사항을 규명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1974년 설립 이래 축적된 PBGC의 경험 그리고 미국을 본받아 2005년 도입된 PPF의 제도는 우리에게 향후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여러모로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적 분석접근 방식에 의거하여 Bodie and Merton(1993)은 보증기구를 민간이 운영하든 국가가 운영하든 부작용 없이 자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적절한 모니터링 체제, 자산운용규제, 리스크 반영 보험요율구조를 든다. 이

러한 요소를 근간으로 해서 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망된다.

첫째, 모니터링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한 퇴직연금제도 자산과 부채의 평가, 비용수익대응주의에 입각한 지급보증기구의 회계처리, 모럴해저드 감소를 위해 지급보증기구의 우선변제권 확보, 책임준비금 적립 수준의 제고 및 적립률과 연결된 급여보상의 통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수준 등에 대한 공시의 강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둘째, 자산운용규제 측면에서, 위험자산의 보유 수준 결정은 퇴직연금제도의 건전성 감독 및 요율산정체제를 통해 통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는 리스크관리의 적절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요율제도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현행 60% 최소 적립률 수준은 대단히 미흡하므로 100% 적립률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적립률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분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추가되어야 하고, 지급보증기구가 보험료를 경험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평성, 단순성, 균형성에 입각한 요율산출원칙 하에 과소적립리스크와 파산리스크를 반영하는 영국의 제도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퇴직보험에 대한 5년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이 2011년부터 특히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얼마나 많이 전환하는가에 따라 사후적 지급보장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 영국의 사례는 퇴직연금 운영 관련 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모럴해저드 및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통계 집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 당국은 정확한 통계 집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이론적 수월성을 갖는 영국의 PPF의 운영성과와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요망된다.